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시행지침 개정안내

1. 「축산발전 기금 운영 규정」 과 관련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용자) 지원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2022년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시행지침'을 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축산농가 등에서 지침 개정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문(3차) 1부.
2. 2022년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시행지침 전문(2차)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사)한국낙농우협회장, (사)전국한우협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주무관 신준호 사무관 서주형 축산환경자원 전결 2022. 7. 1.
과장 정경석

협조자

시행 축산환경자원과-3306 (2022. 7. 1.) 접수

우 5872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 / http://www.mafra.go.kr
인력과

전화번호 044-201-1540 팩스번호 044-868-7217 / eyesonme@korea.kr / 대국민 공개